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7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의자 : 김민기 · 김경협 · 김병욱
김상희 · 김현권 · 노웅래
박남춘 · 손혜원 · 안민석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,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(안 제40조제1항).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별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1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0조(별칙) ① ----- -----<u>2년</u>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